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Analysis of Gender-Responsive Budget Proposals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성은 김소연 김정선 김태민 남명진
박나경 유다연 유연제 이미선 이선화
이한성 허아름 황진솔 예산분석관

지원 | 강숙자 행정실무원
최희현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분석시리즈 IV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22.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여 총 2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 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I. 현황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및 추진체계	1
2. 2023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	4
3.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특징	7

II. 총괄 분석

1.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개선방안	13
2. 부처별 성인지 분석결과 종합	19

III. 주요 부처별 분석

1. 교육부	2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3. 법무부	41
4. 문화체육관광부	45
5. 농림축산식품부	50
6. 보건복지부	54
7. 고용노동부	59
8. 여성가족부	64
9. 국토교통부	71



CONTENTS

10. 해양수산부	75
11. 중소벤처기업부	79
12. 경찰청	84

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¹⁾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²⁾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원배분과 정이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법」 제26조³⁾와 제68조의2⁴⁾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 첨부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1858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2021.12.21. 일부개정, 2023.1.1. 시행)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재정법」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류로 제출된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법」⁵⁾은 성별영향평가⁶⁾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8조의2 그리고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에 바탕을 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제 운영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과 작성양식을 배포한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지원한다.

정부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취합하고, 성인지 예산결산협의회회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 예산안의 첨부서류 또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⁷⁾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과정에서 각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5)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7)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22.5.

[성인지 예·결산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

기 관	역할 및 기능
기획재정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결산서 취합·검토 성인지 예·결산서 국회 제출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결산서에 필요한 기준 제시 협의(기재부)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
해당 부처	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감사원	성인지 결산서 검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해당 기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사업담당자 교육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개 요

2023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38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302개로 예산 전체규모는 32조 7,123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이 215개 사업, 9조 1,644억원이며, 기금사업이 87개 사업, 23조 5,479억원이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과 비교할 때,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중앙관서의 수는 39개에서 38개로 1개가 감소하였고, 전체 예산규모는 27조 3,065억원에서 32조 7,123억원으로 증가되었다. 이 중 일반·특별회계 사업은 16.6% 감소하였고, 기금사업은 44.3% 증가하였다.

한편, 사업 수는 341개에서 302개로 39개(△11.4%) 감소하였는데,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가 244개에서 215개로 29개 감소하였으며, 기금사업 수가 97개에서 87개로 10개 감소하였다.

[2022~2023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22 예산(A)	2023 예산안(B)	증 감	
				(B-A)	(B-A)/A
중앙관서 수		39	38	△1	△2.6
회 계	예 산	109,832	91,644	△18,188	△16.6
	사업 수	244	215	△29	△11.9
기 금	예 산	163,233	235,479	72,246	44.3
	사업 수	97	87	△10	△10.3
합 계	예 산	273,065	327,123	54,058	19.8
	사업 수	341	302	△39	△11.4

주: 2023년도 현황은 정부안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2. 9.

나. 부처별 현황

성인지 대상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44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여성가족부가 35개, 보건복지부가 34개, 중소벤처기업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23개 순이다. 대법원은 2022년에는 대상사업이 없었으나, 2023년에는 1개 사업 76억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사업이 포함되었다.

예산규모는 국토교통부가 9조 9,589억원으로 가장 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8조 3,418억원, 고용노동부 6조 4,975억원 순이다.

[부처별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소관	2022		2023	
	대상사업수	규모	대상사업수	규모
전체	341	27,306,488	302	32,712,253
국회	1	127	1	128
대법원	-	-	1	7,6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68	1	168
기획재정부	5	45,876	5	13,831
교육부	8	202,413	7	178,5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368,514	14	302,791
외교부	8	63,454	6	48,253
통일부	5	51,511	5	50,003
법무부	10	120,618	9	124,057
국방부	4	70,498	4	82,239
행정안전부	9	27,025	5	13,360
문화체육관광부	23	354,736	23	473,964
농림축산식품부	12	386,286	13	435,519
산업통상자원부	6	52,641	5	27,600
보건복지부	37	4,591,090	34	4,577,315
환경부	2	26,673	2	2,167
고용노동부	61	9,624,523	44	6,497,552
여성가족부	36	1,126,028	35	1,260,289
국토교통부	3	34,830	8	9,958,910
해양수산부	13	21,080	11	16,741
중소벤처기업부	23	9,765,014	23	8,341,887
국가보훈처	3	51,726	3	51,412
인사혁신처	2	35,027	2	36,841
식품의약품안전처	3	5,775	-	-
국가인권위원회	2	176	2	176
방송통신위원회	1	1,606	1	1,496

(단위: 개, 백만원)

소관	2022		2023	
	대상사업수	규모	대상사업수	규모
국민권익위원회	3	71	3	63
국세청	1	350	1	432
조달청	1	267	1	257
방위사업청	2	42,313	2	53,489
경찰청	11	130,473	8	56,149
소방청	2	976	2	1,140
문화재청	7	27,524	5	26,177
농촌진흥청	6	14,184	6	14,081
산림청	1	3,608	1	5,275
특허청	5	16,096	4	16,196
질병관리청	1	2,101	1	1,6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31,388	3	31,695
새만금개발청	1	7,970	-	-
해양경찰청	1	1,752	1	2,839

주: 1.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의 예산사업을 합한 현황임
2. 2022년 현황은 본예산 기준임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1) 개요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이후, 정부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부처에서 선정한 대상사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성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지 대상사업의 객관성·타당성 등 여부 및 이로 인한 성인지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부터 대상사업을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선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성인지적 재정운용을 위한 중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이전연도의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⁸⁾의 논의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⁹⁾으로 선정하여 포함하였다.

8) 정부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 제정, 2021.1. 시행)」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기존의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개편하고, 협의회 내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 성인지 예·결산 관련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9) 2023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중앙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사업

[2018~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1. 제1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1. 직접목적 사업 - 제2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1. 직접목적 사업 - 제2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1. 직접목적 사업 - 제2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1. 직접목적 사업 - 제2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1. 직접목적 사업 - 제2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2. 전년도 성인 지예산서 작 성 사업	2. 간접목적사업	2. 간접목적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2. 간접목적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2. 간접목적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2. 간접목적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3. 기타 성별영 향분석이 가 능한 사업	2-①성별영 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3-①'17년 성별 영향평가 대상사업					
3-②기타사업 (자율선정)	2-②기타 성별 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2020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2021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2022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2023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자료: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의 세부 구분 기준

직접목적 사업은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는 사업,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성폭력 예방 및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일·생활 균형 등 사업의 결과가 성평등 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을 말한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직접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사업¹⁰⁾,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10) 정부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정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이 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2017년 12월에 확정되었다.

있지 않으나 양성평등, 여성안전 등을 직접적인 정책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간접목적 사업은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 본래의 고유목적이 별도로 있으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 등으로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간접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 ② 자원 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직접목적 사업은 96개 사업, 14조 4,260억원으로, 2022년 성인지예산과 비교할 때, 사업 수는 3개가 감소하였고 예산규모는 4조 6,278억원에서 14조 4,260억원으로 211.7% 증가하였다. 간접목적 사업은 206개 사업, 18조 2,863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할 때 사업 수는 36개 감소하였고, 예산규모는 19.4% 감소하였다.

[사업유형별 편성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22년(A)	'23년(B)	증감(B-A)	증감률(%)
중앙관서 수		39	38	△1	△2.6
직접목적 사업	예 산	46,278	144,260	97,982	211.7
	사업 수	99	96	△3	△3.0
간접목적 사업	예 산	226,787	182,863	△43,924	△19.4
	사업 수	242	206	△36	△14.9
합 계	예 산	273,065	327,123	54,058	19.8
	사업 수	341	302	△39	△11.4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정부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¹¹⁾의 논의를 통해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재정지

11)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기존의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기획재정부, 여성가

원 일자리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업취약계층인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23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2022년에 이어 중앙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사업¹²⁾으로, 89개 사업, 11조 5,688억원이다.

[2022·2023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22년(A)	'23년(B)	증감(B-A)	증감률(%)
예 산	148,291	115,688	△32,603	△22.0
사업 수	109	89	△20	△18.3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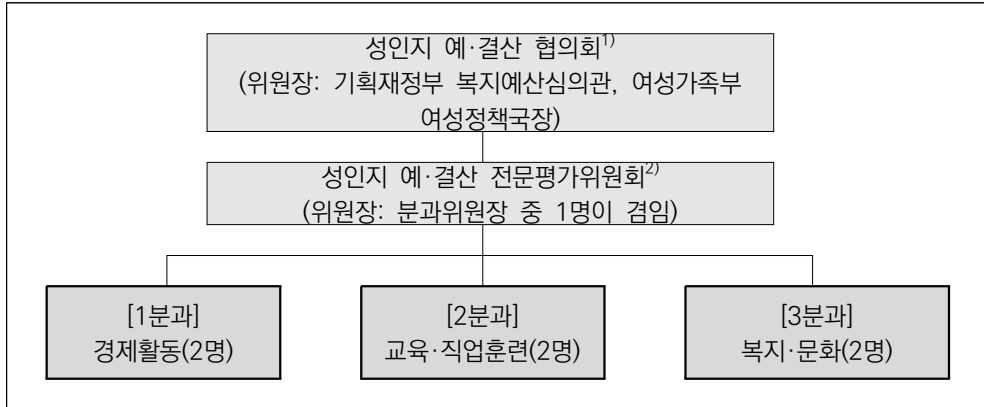
나.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을 통한 대상사업 선정

정부는 2020년 10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기존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를 개편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족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참여)로 개편하여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성과관리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12) 2020·2021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사업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구조]



주: 1) 협의회 위원: 11명 이내(당연직 위원 7명, 민간위원 4명)

2)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3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내에 설치된 전문평가 위원회가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가 심의·협의하여 각 부처에 권고하는 절차를 거쳐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23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절차]

구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절차
1단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시
2단계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한 2023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및 평가 결과 부처 통보
3단계	부처별 2023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제출
4단계	중앙관서가 제출한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사업 명시

정부는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부터 성인지 대상사업 유형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포함된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82개 사업로 예산규모는 5조 620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장애인 성별 및 연령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강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지속적인 성별 수혜율 파악),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여성농업인 참여 제고) 등이 있다.

[2023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예 산	사업 수
성별영향평가 사업	50,620	82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가. 직접목적 사업의 성과지표 등 설정을 위한 구체적·객관적 기준 제시 필요

직접목적 사업¹⁾은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을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성 또는 남성의 지위 향상, 불평등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성과계획서와 유리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1~2022년 성인지 예산서는 직접목적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나, 성과관리 제도의 개편²⁾으로 성과계획서를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함에 따라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단위인 성인지 대상사업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 직접목적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업의 고유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목표치에 대해서는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별 수혜 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 2021년 성인지결산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도록 하였다.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 1) 부처의 성 평등 목표 달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직접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사업, ② 기본계획에는 미포함이나 양성평등, 여성안전 등을 직접적인 정책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법률 제18585호, 2021.12.21.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 관리 및 책임성·전문성을 보유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성과목표관리제도 개편

[2020~2023년 직접목적 사업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기준]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직접 목적 사업	사업의 고유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하기 위한 성과목표 (지표) 설정	사업의 고유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하기 위한 성과목표 (지표) 설정	사업의 고유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하기 위한 성과목표 (지표) 설정	사업의 고유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하기 위한 성과목표 (지표) 설정
	〈신 설〉	성과계획서의 성과지 표 및 목표치와 동 일하게 작성	성과계획서의 성과지 표 및 목표치와 동 일하게 작성	〈삭 제〉

자료: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3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성과지표로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 대수 비율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설정하였다. 이는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경찰청의 신임순경교육 사업은 성과지표로 성평등 인식 향상도를 설정하였는데, 측정산식은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 점수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답변에만 근거하여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성과목표 측면에서도 2021년 성평등 인식 향상도인 3.75점과 동일하게 3.75점으로 설정하여 적절한 도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은 성과지표로 교육실적을 설정하고, 2023년 목표치를 2020년 실적 136,176명, 2021년 실적 158,011명 및 2022년 추정치 121,909명의 평균인 125,566명으로 설정하였다. 동 사업에 따른 교육은 대부분³⁾ 공무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직무교육 및 의무교육임을 고려할 때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로 설정한 측면이 있다.

직접목적 사업은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기준 등에 모호한 측면이 있으면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 투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구체적·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부처

3) 성인지 정책과정, 성별영향평가 과정, 사이버 교육 등

가 설정한 성과목표·성과지표, 목표치 산출과정 등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직접목적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점검 필요

정부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양성평등정책⁴⁾ 등 성 주류화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⁵⁾에 따른 추진사업을 직접목적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직접목적 사업 대상사업 선정기준]

사업유형	대 상
직접목적사업	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사업
	②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미포함이나 양성평등, 여성안전 등을 직접적인 정책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그런데 2023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사업⁶⁾,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⁷⁾,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교

4)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정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이 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2017년 12월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6)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의 내역사업

7)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육 사업⁸⁾, 농업·농촌교육훈련 사업⁹⁾ 등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¹⁰⁾ 추진사업이므로 직접목적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나, 간접목적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동 사업들은 본래의 고유목적이 별도로 있으나, 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직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평등 증진을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양성평등정책계획 사업에 대해 직접목적 사업으로서 타당성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사업 선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와 다른 성 주류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9)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10)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2년도 시행계획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및 이행 여부 등 표시 필요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¹¹⁾ 및 「성별영향평가법」¹²⁾에 따라 정부가 성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계획, 사업, 정부홍보물 등 정책¹³⁾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는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¹⁴⁾ 및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16 조제5호¹⁵⁾ 등에 따라 정부의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개선의견이 제시된 사업 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포함한다.

또한, 정부는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대상사업 유형에 성별영향평가 결과

11)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12) 「성별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 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1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4)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1858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2021.12.21. 일부개정, 2023.1.1. 시행)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 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를 반영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실태조사 시 성별 구분통계 작성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표시하였을 뿐으로 개선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시 성별·연령별 분리 조사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만족도 조사에서도 성별·연령별 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은 여성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신청자 중 여성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목적이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양성임을 고려할 때, 여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중 여성 비율’ 등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 유형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임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성별영향평가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에 개선의견 및 개선의견 반영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정부는 2020년 10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내에 설치된 전문평가위원회가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심의·협의를 거쳐 부처에 권고하는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다.

그러나,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결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국립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초·중등 장애학생에 대하여 교수학습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등을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대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편의 제공,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초·중등 국립특수학교는 의무무상교육이며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초·중등 학생 전체가 지원 대상으로, 성평등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할 여지가 높지 않으므로,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역사업만 성인지 대상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례관리 수혜자 중 여성 비율 등 성평등 관점의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대상사업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가족’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대상자인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위기가족 등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거나 고려하기 어렵고, 성평등적 접근에 한계가 있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부처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성인지 대상사업 제외 필요 사유
교육부	인문사회기초 연구(R&D) (학문후속세대 지원)	인문사회분야 국 내외 석·박사학 위 소지 비전임 연구자를 대상으 로 연구비를 지원	- 인문사회분야 박 사급 우수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성평등한 학술활 동 유지를 통해 대 학과 국가 연구 역 량 제고에 기여	- 동 사업은 전문기관 평가에 따라 상대적 으로 우수한 연구 과 제를 선정하여 지원 하는 사업으로, 지원 자의 성별에 관계없 이 공정한 요건에 따 라 대상 과제를 선정 · 지원하고 있음. 또한 사업수혜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아도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지 않아 성인지 대 상사업으로 적절성 여부 에 대한 재검토 필요
	장애학생 교육지원	국립특수학교 초 중등 장애학생과 장애대학생을 대 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학습 권 보장	- 장애학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 고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남녀 장애인의 역 량 강화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제공	- 국립특수학교에 재학 하는 초중등 장애학 생은 의무 무상교육으 로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할 필 요성이 낮으므로 성 인지 대상사업으로 재검토 필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마케팅 강화)	국내 정보통신방 송 융합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 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수출 확 대를 위한 민간 부문 글로벌 마 케팅 강화 활동 지원	- 동 사업 참가 신청 ICT 여성기업 대 부분이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 으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이 절대 적으로 낮은 수준	- 글로벌 마케팅 사업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 원하기 때문에 지원대 상의 특성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기 어려움 - ICT 중소기업 중 대 표가 여성인 기업에 대한 통계 부재로 양 성평등 효과를 직접 적으로 분석하는데 에도 한계가 있음

부처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성인지 대상사업 제외 필요 사유
문화체육 관광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이야기할머니들 이 어린이를 대 상으로 전통 구 연동화를 전달함 으로써 조손 세 대 간 소통을 증 진하고, 여성 고 령인력의 일자리 를 창출	- 여성 고령인력 일 자리 창출로 사회 공헌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전승 기반 조성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은 만 56~80세의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동 사업 참여자를 대상 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거나 고려하기 어려움
여성 가족부	가족역량 강화 지원	취약·위기가족 에 대한 사례관 리로 가족기능 회복,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성별영향평가 결 과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성과지표 신규 반영 필요성 의견	- '가족'을 사업대상 으로 하고 있어 수혜 자의 성별 구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대상자인 저소 득 한부모·조손가 족 및 위기가족 등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 지고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 개선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성 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음
국토 교통부	다가구매입 임대출자	한부모 가족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 여 다가구 주택 등 을 매입하고 개보 수 후 공급	- 주거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 여 성폭력피해자 등 과 같은 여성 사 회취약계층의 사 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	- 동 사업들은 성별보 다는 소득수준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높 지 않음
	다가구매입 임대 (용자)			
	전세임대 (용자)	공공주택사업자 가 기존 주택 소 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 계층에게 저렴하 게 재임대		

부처명	세부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성인지 대상사업 제외 필요 사유
	전세·매입 임대 경상보조	다가구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사 업의 주택 관리· 운영 등 부대경 비를 지원		
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강의 콘텐츠	사이버범죄 관련 표준강의안을 제 작하여 일반국민 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	- 경찰관으로 구성 된 예방강사의 사 이버범죄 관련 표 준강의안을 제작, 활용하는 것으로, 남·여 통합 교육 에 활용된다는 점 에서 양성에 맞게 균형감 있는 표준 강의안을 제작하 는 것이 필요	- 사이버범죄의 대상 은 성별 관련 제한이 없으므로, 사이버범 죄 예방 교육 표준강 의안의 제작이 양성 평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정부는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산출근거 작성 시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에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거나,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는 ‘여성대학생 참여율(%)’로, 성과목표를 27.8%로 설정하였는데 2021년 실적인 43.8%인 점 및 ICT분야 여성 전공자 증가 추세(2019년 26.6% → 2021년 28.9%)를 고려하여 2023년 성과목표에 대한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내일이룸학교 사업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중도탈락률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과 등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성별에 따른 형평성, 성별수해분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 목표	분석 의견
교육부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	19.8	- 「교육공무원법」 제 11조의5 및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평가 취지를 고려하 여,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제고 및 여성 대표성 강화 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성과지표 관리 필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 성 (ICT학점연계프로젝 트인턴십)	여성대학생 참여율(%)	27.8	- 2021년 실적(43.8%)과 ICT분야 여성 전공자 증가 추세('19, 26.6% → '21, 28.9%)를 고려하여 도전 적인 목표 설정 필요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 목표	분석 의견
법무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	67,569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양성 평등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 육성 (게임인재원 운영)	교육만족도(점)	80.0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 의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수혜자 만족도	96	
농림축산 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신청자 중 여성 비율(%)	19.8	- 교육신청자라는 투입지표 는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 기 어려움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자활근로 여성참여자 비율(%)	50.0	- 2021년 실적치(51.1%), 2022년 추정치(52.2%) 와 2022년도 사업 대상자 비율(55%)을 고려하여 2023년 성과목표치의 상 향 조정 검토 필요
고용노동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혜자 수(명)	2,714	- 성별 구별 없이 사업 참여 자 수를 기준으로 성과지표 를 설정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 퇴직전문인력에게 미 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 할 수 없음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중도탈락률 (하향지표,%)	25.0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 른 성과 등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 필 요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 목표	분석 의견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지원	교육인원 (명)	125,566	- 대부분 공공분야 종사자의 직무교육 또는 의무교육임 을 고려하여 목표치 상향으 로 적극적 추진 필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여성 구직자 참여율(%)	41.6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 의 실제 목표 달성 평가가 어려움 - 2020·2021년 실적치보 다 하향된 성과목표를 설정 하고 있어 도전적인 성과목 표치 설정 필요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고여객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만족도(점)	80.0	- 전체 교통약자에게 효과적 인 성과지표로서, 동 사업 에 따른 양성평등 제고 효 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여성창업자 수혜비율(%)	26.0	- 2021년 실적치가 28.2%, 2022년 추정치가 31.1% 임과 중소기업부의 통 계상 여성창업자 비중이 46.6%임을 고려하여 2023 년 성과목표치의 상향 조정 검토 필요
경찰청	신임순경교육	성평등 인식 향상도	3.75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 의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움 - 2023년 성과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

다. 양성평등 제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

성인지 대상사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통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 구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대상자의 성비에 비하여 사업수혜자의 성비가 연례적으로 차이가 나는 등 양성평등 제고 효과가 미흡하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이 있었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창업교육, 실험·실습, 멘토링·네트워킹, 실험자금 및 본격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성별 비율에 비해 사업수혜자 중 여성 비율이 연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예비창업자 성별에 따른 창업교육 내용 선호도, 여성가족부 추천에 따른 가점이 선발에 미치는 영향 등 성별 편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양성평등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 제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 현황]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창업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예비창업자 성별에 따른 창업교육 내용 선호도, 여성가족부 장관 추천 가점 등 성별 편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참여 유도 필요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III

주요 부처별 분석

1

교육부

가. 현황

교육부의 성평등 목표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이며, 하위 목표는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이다. 둘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이며, 하위 목표는 교육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이다. 셋째,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이며, 하위 목표는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및 대응강화이다. 넷째,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여성의 경력 유지·개발 지원이다. 다섯째,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증진이며, 하위 목표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기반 강화이다.

2023년도 교육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7개로, 일반회계 6개와 기금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1,078억 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 획안은 707억 3,3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1,785억 4,100만원이다.

[교육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1) 장애학생교육지원	14,273	간접
		2)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491	직접
		3)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84	직접
		4)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1,325	간접
		5) 인문사회 기초연구(R&D)		
		- 학문후속세대지원	61,040	간접
		6) 평생교육바우처지원	20,595	간접
소계(6개 세부사업)			107,808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기금	사학진흥 기금	1)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학진흥 기금)(용자)	70,733	직접
소계(1개 세부사업)			70,733	
합계(7개 세부사업)			178,541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2년도 대상사업 수 8개에 비해 1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22년도 1,814억 1,300만원 대비 28억 7,200만원(△1.58%)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7	97,685	6	107,808	△1	10,123(10.4)
기금	1	83,728	1	70,733	-	△12,995(15.5)
합계	8	181,413	7	178,541	△1	△2,872(1.6)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교육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등 3개 사업이며, 회계 5억 7,500만원, 기금 707억 3,300만원으로 총 713억 8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장애학생교육지원 등 회계 4개 사업이며, 총 1,072억 3,3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2	575	4	107,233
기금	1	70,733	-	-
계	3	71,308	4	107,233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교육부의 성인지 사업 중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인문사회 기초연구(R&D)의 내역사업인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이 있다.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국내외 석·박사학위 소지 비전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문사회 기초연구(R&D)의 내역사업이다.

교육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2020년 ‘여성연구자 과제 수혜율’에서 ‘학문후속세대 지원과제 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본 사업은 전문기관 평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특정 성별의 수혜율을 조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특정 성별 우대 조치 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 예산 확대 노력을 통해 전체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지원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21년 실적	'22년 추정치	'23년 목표치
학문후속세대 지원과제 수(개)	2,591	2,696	2,40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또한 동 사업의 수혜자를 보면, 2022년 기준 여성 비율이 65.0%로 남성 비율(35.0%) 보다 30.0%p 높은 수준이다.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 사업수혜자]

구 분		2020	2021	2022
학문후속세대 지원	전체	3,389명	2,626명	2,696명
	여성(비율)	2,200명(64.9%)	1,734명(66.0%)	1,752명(65.0%)
	남성(비율)	1,189명(35.1%)	892명(34.0%)	944명(35.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그런데 동 사업은 전문기관 평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요건에 따라 대상 과제를 선정·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수혜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아도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지 않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학생 교육지원은 국립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초·중·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등의 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초·중·고 국립특수학교는 의무·무상교육이며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초·중·고 학생전체가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국립특수학교 초·중·고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양성 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할 여지가 높지 않은 사업이다. 2021년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를 보면, 초·중·고 학생의 경우 국립특수학교 재학생 전체(1,191명)가 지원대상자이며 사업수혜자 역시 재학생 전체(1,191명)이다.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초중등	남	801	801	792(66.5)	792(66.5)
	여	409	409	399(33.5)	399(33.5)
	계	1,210	1,210	1,191(100.0)	1,191(100.0)
고등 (대학교)	남	5,813	813	5,885(60.0)	1,396(51.6)
	여	3,904	749	3,930(40.0)	1,311(48.4)
	계	9,717	1,562	9,815(100.0)	2,707(100.0)
계	남	6,614	1,614	6,677(60.7)	2,188(56.1)
	여	4,313	1,158	4,329(39.3)	1,710(43.9)
	계	10,927	2,772	11,006(100.0)	3,898(100.0)

주: () 안의 숫자는 비중
자료: 교육부

다만, 장애대학생의 경우 일부 학생(2021년 사업대상자 11,006명 중 3,898명을 지원)에 대해 진로·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대상자의 남성 및 여성 비중이 60.0%, 40.0%이나 사업수혜자의 남성 및 여성 비중이 51.6%, 48.4%로 사업대상자 비중과 차이를 보이므로,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립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초중등 장애학생 지원 예산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므로 제외하고,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역사업만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분석 의견
인문사회 기초연구 (R&D) (학문후속 세대 지원)	인문사회분야 국 내외 석·박사학 위 소지 비전임 연구자를 대상으 로 연구비를 지 원	-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우수인력에 대한 지속 적이고 성평등한 학술 활동 유지를 통해 대학 과 국가 연구 역량 제고 에 기여	- 동 사업은 전문기관 평가 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수 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공 정한 요건에 따라 대상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분석 의견
			음. 또한 사업수혜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봐도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지 않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장애학생 교육지원	국립특수학교 초·중등 장애학생과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	장애학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녀 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제공	- 국립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초·중등 장애학생은 의무·무상교육으로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재검토 필요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은 대학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제고 및 양성평등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사업으로,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로 2023년 19.8% 수준이다.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21년 실적	'22년 추정치	'23년 목표치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	18.9	19.1	19.8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 별표²⁾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목표 비율에 근거하여 동 사업의 성과목표를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로 정하고 성과목표치도 법에서 정한 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취지는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동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양성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 별표(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제6조의4제3항 관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	2027	2028	2029	2030년 이후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	17.5%	18.3%	19.1%	19.8%	20.6%	21.4%	22.2%	22.9%	23.6%	24.3%	25.0%

평등 조치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이 제출한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매년 분석 및 평가한다.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평가는 여성교수 비율 뿐만 아니라 여성교수 대표성, 여성교수 위상도, 여성교수 비율 제고 노력, 대학의 양성평등 구현 노력의 4가지 평가영역에서 12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성교수 대표성 평가영역에서는 신입 여성교수 채용의 적절성의 배점이 가장 높으며 전체 여성교수의 적절성, 계열 특성을 고려한 여성교수의 적절성, 여학생 비율 대비 여성교수 비율의 적절성 등이 평가 대상이다.

[2021년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영역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방식
1. 여성교수 대표성 (40점)	1.1 신입 여성교수 채용의 적절성	25점	정량평가
	1.2 전체 여성교수의 적절성	5점	
	1.3 계열 특성을 고려한 여성교수의 적절성	5점	
	1.4 여학생 비율 대비 여성교수 비율의 적절성	5점+(가점 1점 이하)	
2. 여성교수 위상도 (25점)	2.1 주요 보직 여성교수의 적절성	15점	정량평가
	2.2 주요 위원회 여성교수의 적절성	10점	
3. 여성교수 비율 제고 노력(20점)	3.1 계열별 여성교수 임용목표비율의 적정성	10점	정성평가
	3.2 계열별 여성교수 임용목표비율의 달성도	10점	정량평가
4. 대학의 양성평등 구현 노력(15점)	4.1. 대학 내 성평등 관련 상담센터 운영	5점	정성평가
	4.2. 양성평등 추진기구 활동실적	2점	
	4.3. 여성교원의 의사결정 참여 제고 및 역량 강화	4점	
	4.4. 학문후속세대 여성인재 육성 및 개발	4점	
총 점		100점+가점	-

자료: 교육부

동 사업으로 추진된 평가 결과(교육부,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사업», 2021년)에 따르면 국립대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 실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신입교원 여성 비율, 전임교원 여성 비율, 보직자 중 여성 비율 등에 있어서 국립대학 내에서도 유형별(일반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로 편차가 커서 대학별·계열별 양성평등 달성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대학의 주요 보

직자 중 여성비율은 12.1%이며, 대학의 양성평등 구현 노력의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에 9.1점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여성교수 비율 목표치의 달성 여부로만 파악하면 여성 교수 대표성, 여성 교수 위상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학 내 양성평등 제고 및 여성 대표성 강화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관리 개선 필요 사항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및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취지를 고려하여,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제고 및 여성 대표성 강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관리 필요

가.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R&D사업 참여의 성별 격차 완화이다. 둘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이며, 하위 목표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 경력개발과 여성 대표성 제고이다.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14개로, 일반회계 7개와 기금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2,411억 9,7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615억 9,4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3,027억 9,100만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1) DB산업 육성(정보화) -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2,091	간접
		2)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 (R&D) - 중견연구(최초신규) (중견연구(R&D))	199,644	간접
		3)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R&D)	4,400	간접
		4)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운영	443	간접
		5) 인재활용확산지원(R&D) -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14,985	간접
		6) 전파미래융합장감양성 - 중소벤처기업 재직전문가 양성 지원	700	간접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R&D)	18,934	직접
소계(7개 세부사업)			241,197	
기 금	원자력기금	1)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 사업(R&D)	4,300	간접
	정보통신 진흥기금	2)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 차세대보안리더양성	4,600	간접
		-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2,843	간접
	방송통신 발전기금	3) ICT 창의기업 육성		
		-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904	간접
		4)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 글로벌 마케팅 강화	1,011	간접
		5)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R&D)		
		-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	39,200	간접
		6)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		
		- 개발자기술교육*	1,058	간접
	과학기술 진흥기금	7)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 운영	5,678	직접
소계(7개 세부사업)			61,594	
합계(14개 세부사업)			302,791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2년도 대상사업 수 17개에 비해 3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22년도 3,035억 5,200만원 대비 7억 6,100만원(0.3%)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9	245,418	7	241,197	△2	△4,221(1.7)
기금	8	58,134	7	61,594	△1	3,460(6.0)
합계	17	303,552	14	302,791	△3	△761(0.3)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등 2개 사업이며, 회계 189억 3,400만원, 기금 56억 7,800만원으로 총 246억 1,2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DB산업 육성(정보화)의 내역사업인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등 13개 사업이며, 회계 2,222억 6,300만원, 기금 559억 1,600만원으로 총 2,781억 7,9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	18,934	6	222,263
기금	1	5,678	7	55,916
계	2	24,612	13	278,179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마케팅 강화 사업은 국내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수출을 위한 민간부문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현지 ICT 비즈니스콘텐츠 파트너십을 개최하고, 홍보채널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글로벌 마케팅 강화 사업의 성평등 목표 및 기대 효과는 참여기업 대표의 성별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 법인의 경우 대표의 성별 교체에 따른 효과를 재정지원 전후에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의 특성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거나 고려하기 어렵고 양성평등을 고려한 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인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ICT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ICT 중소기업 중 대표가 여성인 기업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동 사업의 수혜자 및 예산 편성 내용 등이 남녀를 구분하여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직접적인 분석에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연간 50개사 내외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2021년 신청기업 102개사 중 대표가 여성인 기업은 4개사이나, 대표의 성별에 따른 ICT기업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사업이 여성이 대표인 기업을 지원함에 따른 양성평등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분석 의견
정보통신 방송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마케팅 강화)	국내 정보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민간부 문 글로벌 마케팅 강화 활동 지원	- 동 사업 참가 신청 ICT 여성기업 대부분이 해외진 출 경험이 없는 기업으로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에 대한 지원비 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 글로벌 마케팅 사업은 법 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특성상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기 어려움 - ICT 중소기업 중 대표가 여성인 기업에 대한 통계 부재로 양성평등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데 도 한계가 있음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은 기업에서 제안한 ICT 및 ICT융합 분야 직무 중심의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등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직업훈련 사업이다.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여성대학생 참여율'로 설정되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한 27.8%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실적인 43.8%에 비해 16.0%p 낮게 설정된 것으로 적정한 도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동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354명 중 여성 대학생은 155명(43.8%)이었고, 취창업이 유망한 컴퓨터·통신 등 ICT분야의 여성 전공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성과목표는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2019~2021년 컴퓨터·통신 분야 전공의 여학생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전체 재학생 수(A)	145,491명	148,769명	150,934명
여학생 수(B)	38,740명	41,207명	43,689명
비중(B/A)	26.6%	27.7%	28.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여성대학생 참여율(%)	27.8%	- 2021년 실적(43.8%)과 ICT분야 여성 전공자 증가 추세('19, 26.6% → '21, 28.9%)를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정 필요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법무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폭력피해 지원 및 인권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이다. 둘째,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이며, 하위 목표는 성폭력 처벌 강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이다. 셋째,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보호·지원 및 인권보장 강화이며, 하위 목표는 성폭력 피해 지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강화이다.

2023년도 법무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9개로, 일반회계 5개와 기금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671억 9,0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568억 6,7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1,240억 5,700만원이다.

[법무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2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1) 교정교화	10,537	간접
		2)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1,721	직접
		3) 보호관찰활동	14,002	직접
		4) 전자감독	30,677	직접
		5) 양성평등정책 지원	253	직접
소계(5개 세부사업)			67,190	
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8,263	간접
		2)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360	직접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37	직접
		4)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707	직접
소계(4개 세부사업)			56,867	
합계(9개 세부사업)			124,057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1년도 대상사업 수 10개에 비해 1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22년도 1,164억 4,500만원 대비 76억 1,200만원(6.5%)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6	61,315	5	67,190	△1	5,875(9.6)
기금	4	55,130	4	56,867	-	1,737(3.2)
합계	10	116,445	9	124,057	△1	7,612(6.5)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법무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치료감호자수용관리 등 7개 사업이며, 회계 566억 5,300만원, 기금 486억 400만원으로 총 1,052억 5,7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교정교화 등 2개 사업이며, 회계 105억 3,700만원, 기금 82억 6,300만원으로 총 188억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4	56,653	1	10,537
기금	3	48,604	1	8,263
계	7	105,257	2	18,800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법무부는 스마일센터 심리지원(‘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의 내역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스마일센터 심리지원은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이 심리적 피해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인 강력범죄 피해자 대비 사업수혜자(스마일센터 심리지원) 비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20년 12.9%, 2021년 13.6%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2020년 6.7%, 2021년 7.4%로 나타나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스마일센터 심리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 비율]

구 분		2020	2021	2022
여성	사업대상자(A)	29,463명	29,463명	29,463명
	사업수혜자(B)	1,970명	2,173명	2,071명
	수혜율(B/A)	6.7%	7.4%	7.0%
남성	사업대상자(A)	3,349명	3,349명	3,349명
	사업수혜자(B)	432명	457명	445명
	수혜율(B/A)	12.9%	13.6%	13.3%

주: 1. 2021년 범죄분석 통계 미발표로 2021년 및 2022년 사업대상자 통계치는 2020년 수치로 대체

2. 2022년 사업수혜자는 추정치로 2개년도 평균 수치임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재구성

동 사업의 성평등 기대효과는 ‘여성피해자 및 가족·보호자의 일상생활로의 복귀 지원’이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스마일센터 종합지원 건수’로 설정하고, 스마일센터의 심리지원 건수와 법률지원 건수를 그 측정산식으로 하고 있어 성평등 기대효과인 ‘여성피해자 및 가족·보호자의 일상생활로의 복귀 지원’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사업 성과목표(지표) 현황]

성과목표(지표)	'21년 실적	'22년 추정치	'23년 목표치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	62,748	66,244	67,569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따라서 동 사업은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 수의 증가가 성평등 기대효과인 ‘여성피해자 및 가족·보호자의 일상생활로의 복귀 지원’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력범죄 피해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피해자 성별에 따른 스마일센터 종합지원 건수로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	67,569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양성평등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며, 하위 목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문화가치 확산이다. 둘째,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별 균형 제고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이며, 하위 목표는 ①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력 및 종사자들의 성별 균형 확대, ②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이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23개로, 일반회계 및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 특별회계 13개와 기금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회계 예산안은 2,878억 4,3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861억 2,1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4,739억 6,400만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1)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 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	126	직접
		2)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2,000	간접
		- 콘텐츠 창작 및 초기창업 육성지원	1,091	간접
		3) 게임산업육성 - 게임인재원운영*	4,958	간접
		4)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500	간접
		-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무지개다리 사업)	2,200	간접
		5)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5,940	간접
		- 인생나눔교실 운영	3,300	간접
		6)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5,507	간접
		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6,899	간접

이전화 예산분석관(brillish@assembly.go.kr, 6788-4635)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기금		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0,714	간접
		9)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 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3,878	간접
		10)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1,061	간접
		11) 국립극장 운영	33,829	간접
		12)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1,340	직접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 특별회계	13)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4,000	간접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500	간접
	소계(13개 세부사업)		287,843	
	국민체육 진흥기금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73,096 11,172	간접 간접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43,448	간접
		3)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 은퇴선수 지원(선수진로지원)* (은퇴선수 지원(선수진로지원))	1,548	간접
		4) 체육인재 육성 - 체육분야 현장 전문가 교육 지원	1,004	간접
		5)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7,268	직접
		6)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 장애인선수 육성지원 (국가대표훈련지원)	16,268	간접
		문화예술 진흥기금	7) 예술인력 육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위 지원*	9,833
8)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11,814	간접
관광진흥 개발기금		9) MICE산업육성지원 -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355	간접
		10) 영화정책지원 -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현장영화인인력양성 - 공정한경사업(한국영화성평등 센터 운영지원)	9,865 450	간접 직접
소계(11개 세부사업)		186,121		
합계(23개 세부사업)		473,964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1년도 대상사업 수 23개와 동일하며, 예산안은 2022년도 3,524억 9,600만원 대비 1,214억 6,800만원(34.5%)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12	245,306	13	287,843	1	42,537(17.3)
기금	11	107,190	10	186,121	△1	78,931(73.6)
합계	23	352,496	23	473,964	-	121,468(34.5)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문화체육관광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의 내부사업인 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며, 회계 14억 6,600만원, 기금 77억 1,800만원으로 총 91억 8,4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등 25개 사업이며, 회계 2,863억 7,700만원 기금 1,784억 300만원으로 총 4,647억 8,0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2	1,466	15	286,377
기금	2	7,718	10	178,403
계	4	9,184	25	464,780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은 이야기할머니들이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 구연동화를 전달함으로써 조손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고, 여성 고령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기회 확대 및 삶의 자긍심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은 만 56~80세의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동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양성평등을 고려한 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분석 의견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이야기할머니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 구연동화를 전달함으로써 조손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고, 여성 고령인력의 일자리를 창출	- 여성 고령인력 일자리 창출로 사회공헌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전승 기반 조성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은 만 56~80세의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동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거나 고려하기 어려움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게임인재원 운영 사업은 게임개발자를 꿈꾸는 예비 취·창업자에게 게임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신성장시대의 고용트렌트에 적합한 게임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의 성인지 성

과지표는 ‘교육만족도’로 설정되어 있으나, 성별 구분 없이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어 양성평등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은 체육지도자를 시군구 체육회에 배치하여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사업수혜자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없고, 사업참여자의 성별 구분 없이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어 양성평등효과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효과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게임산업 육성(게임인재원 운영)	교육만족도(점)	80.0	- 현재의 성과지표는 양성평등효과를 측정하기에 부적절하게 설정됨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수혜자 만족도(점)	96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이며, 하위 목표는 ①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통한 농촌공동체의 여성 참여 활성화, ② 여성농업인의 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이다. 둘째,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① 소득기반 확대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 ②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및 직업역량 강화이다. 셋째, 농식품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이며, 하위 목표는 농식품 분야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이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13개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0개와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 1개, 기금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3,935억 4,3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419억 7,6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4,355억 1,90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 농기계임대	24,800	간접
		2)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55,106	간접
		3)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농업·농촌교육훈련	41,804	간접
		4) 농촌고용인력지원*	12,592	간접
		5)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34,518	간접
		6)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 귀농귀촌 교육	7,134	간접
		7)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8,000	간접
		8)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69,616	간접
		9)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36,683	간접

유연제 예산분석관(fabric_yy@assembly.go.kr, 6788-4651)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10)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1,990	직접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	11)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1,300	간접
소계(11개 세부사업)			393,543	
기금	자유무역 협정이행 지원기금	1) 농식품모태펀드출자	40,000	간접
	농산물가격안 정기금	2)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1,976	간접
소계(2개 세부사업)			41,976	
합계(13개 세부사업)			435,519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2년도 대상사업 수 12개에 비해 1개가 증가한 것이며, 예산안은 2022년도 4,080억 7,800만원 대비 274억 4,100만원(6.7%)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10	365,983	11	393,543	1	27,560(7.5)
기금	2	42,095	2	41,976	-	△119(0.3)
합계	12	408,078	13	435,519	1	27,441(6.7)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1개 사업이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9억 9,000

만원으로 총 19억 9,0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농기계임대 등 12개 사업이며, 특별회계 3,915억 5,300만원, 기금 419억 7,600만원으로 총 4,335억 2,9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	1,990	10	391,553
기금	-	-	2	41,976
계	1	1,990	12	433,529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스마트팜 영농 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팜 관련 취·창업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신청자 중 여성 비율’로 설정되어 있으며, 3년간의 평균 여성 신청자 비율로 성과목표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교육신청자 숫자라는 투입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기회의 제공에 따른 것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이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인 만큼 성평등 목표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을 수료한 스마트팜 전문인력이 성별로 형평성있게 배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성과지표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중에서 여성 비율’인 산출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신청자 중 여성 비율	19.8%	- 교육신청자라는 투입지표는 사 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어려움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보건복지부의 성평등 목표는 네 가지이다. 첫째,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이며, 하위 목표는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둘째, 다양한 부문의 여성참여 확대이며, 하위 목표는 ①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이다. 셋째, 건강과 복지 증진이며, 하위 목표는 ① 여성 건강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접근권 개선, ② 건강한 임신, 출산지원 강화, ③ 노인 돌봄에 대한 지원강화, ④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⑤ 대상별 복지지원 강화이다. 넷째,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및 복지증진이며, 하위 목표는 ①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및 복지증진, ②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34개로,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8개와 기금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4조 3,420억 3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352억 8,5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4조 5,773억 1,5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1) 자활사업		
		- 자활근로사업*	609,393	간접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1,305	간접
		3) 장애인활동지원	1,991,879	간접
		4)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127,226	직접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7,829	직접
		5)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734	직접
		- 여성장애인출산지원	779	직접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38)

허아름 예산분석관(liebe89@assembly.go.kr, 6788-3728)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6) 장애인일자리지원*	207,299	간접
		7)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2,703	간접
		8)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 장애친화 산부인과	900	직접
		9)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9,551	간접
		10) 노인보호전문기관	11,919	간접
		1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890	간접
		12) 시간제보육 지원	20,413	직접
		13) 어린이집 확충	49,170	직접
		14)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1,892	간접
		15)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941	직접
		16)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 어린이집 평가 운영	9,500	직접
		17)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보육서비스지원/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대체교사))	56,011	직접
		- 그 밖의 연장형 교사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그 밖의 연장형교사))	64,771	직접
		18)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75,854	직접
		19)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 전공의 등 육성지원	1,591	간접
		20)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3,791	간접
		21)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37,954	간접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22)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1,498	직접
		23)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다함께 돌봄 사업)	55,373	직접
		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97,354	간접
		2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8,992	간접
		26)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자율)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3,079	간접
		27)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	10,925	직접
		28)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8,514	간접
		소계(28개 세부사업)	4,342,030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1) 치매관리체계 구축	189,753	간접
		2) 모자보건사업		
		- 성생식건강증진	923	직접
		3) 건강증진조사연구 및 지역보건 사업관리	1,053	간접
		4)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상담전화	2,056	간접
	응급의료 기금	5)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지원	6,000	직접
	국민연금기금	6)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35,500	간접
소계(6개 세부사업)			235,285	
합계(34개 세부사업)			4,577,315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1년도 대상사업 수 37개에 비해 3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22년도 4조 4,711억 4,300만원 대비 1,061억 7,200만원 (2.4%)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30	4,220,450	28	4,342,030	△2	121,580(2.9)
기금	7	250,693	6	235,285	△1	△15,408(6.1)
합계	37	4,471,143	34	4,577,315	△3	106,172(2.4)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보건복지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장애아동가족지원의 내부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 등 17개 사업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551억 2,800만원, 기금 69억 2,300만원으로 총 6,598억 4,7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자활사업 등 20개 사업이며, 회계 2조 9,311억 6,700만원 기금 2,283억 6,200만원으로 총 3조 9,174억 6,8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5	652,924	16	3,689,106
기금	2	6,923	4	228,362
계	17	659,847	20	3,917,468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인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자활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시장 취·창업 후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자활근로 여성 참여자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2021년 자활근로의 여성 참여자 비율은 51.1%이고, 2022년 여성참여자 비율의 추정치는 52.2%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23년 목표치를 50%로 설정하여 기존의 여성참여자 비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자활근로 여성참여자 비율의 2021년 실적 및 2023년 목표]

성과목표(지표)	'21년 실적	'22년 추정치	'23년 목표치
자활근로 여성참여자 비율(%)	51.1	52.2	50.0

자료: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목표가 되는 자활근로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최근 3년간 (2020년~2022년) 55%가 여성으로 2023년의 경우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목표치를 50%로 설정한 것은 사업대상 인원 대비 실제 자활근로 여성 참여자의 비율을 더 낮게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자활근로사업	전체	2,055,672명	2,276,667명	2,449,427명
	여성(비율)	1,131,609명 (55.0%)	1,261,715명 (55.4%)	1,347,185명 (55.0%)
	남성(비율)	924,063명 (45.0%)	1,014,952명 (44.6%)	1,102,242명 (45.0%)

자료: 보건복지부

즉, 2023년도 성인지 성과목표의 수준(50%)이 과년도 실적(51.1%) 대비해서도 저조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낮은 목표 설정이 사업대상자 비율(55%)과 비교해서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2023년도 성과목표치의 상향 조정을 통해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자활근로	자활근로 여성참여자 비율(%)	50%	- 2021년 실적치(51.1%), 2022년 추정치(52.2%)와 2022년도 사업대상자 비율(55%)을 고려하여 2023년 성과목표치의 상향 조정 검토 필요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목표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① 고용의 평등성 제고 및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②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이다. 둘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이며, 하위 목표는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이다. 셋째,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이며, 하위 목표는 ①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② 대상별 고용 활성화이다. 넷째,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이며, 하위 목표는 ①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②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③ 기업의 가족친화경영확산이다. 다섯째, 성인지적 건강증진이며, 하위 목표는 여성 건강증진이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44개로,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9개와 기금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회계 예산안은 1조 4,372억 5,5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5조 602억 9,7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6조 4,975억 5,2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1)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952	간접
		2)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	28,936	간접
		3)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428,192	간접
		4) 해외취업지원*	46,786	간접
		5)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1,500	간접
		6) 취약계층취업촉진*	11,654	간접
		7)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2,030	직접
		8) 내일배움카드(일반)*	527,815	간접
		9)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기 금		- 과정평가형자격제도운영	6,471	간접
		10)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다기능기술자*	19,089	간접
		11)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22,729	간접
		12)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987	직접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1,215	직접
		1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572	직접
		14) 중장년층취업지원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4,154	간접
		15)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임금격차 완화 지원)	2,425	간접
		16) 노사발전재단지원		
		- 일생활균형확산지원	18	직접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7) 사회적기업육성(균특)*		
		- 일자리창출사업	93,530	간접
		18)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147,504	간접
		19)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696	간접	
소계(19개 세부사업)			1,437,255	
	고용보험 기금	1)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64,771	간접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2,521	간접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1,164	간접
		- 장년고용지원*	20,001	간접
		2)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7,100	간접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3,400	간접
		3)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209,299	간접
		4) 내일배움카드(고보)*	887,312	간접
		5)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308,030	간접
		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144,521	간접
		7)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99,232	간접
		8)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 전문기술과정*	9,239	간접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 여성재취업훈련¹ *	4,756	직접
		- 소규모사업장훈련*	1,113	간접
		- 하이테크과정*	7,650	간접
		- 신중년특화과정*	4,798	간접
		9)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53,520	간접
		10)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¹ *	135,453	직접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¹ *	22,164	직접
		- 정규직 전환 지원*	12,307	간접
		11)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13,354	직접
		12) 모성보호육아지원*	2,100,641	직접
		13)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6,795	간접
	14) 일터혁신 지원*	28,004	간접	
	장애인 고용촉진및직 업재활 기금	15) 장애인고용장려금*	297,747	간접
		16)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	216,341	간접
		17) 장애인취업지원*	32,060	간접
		18)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1,018	간접
		19)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2,301	간접
		20)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44,883	간접
		21)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장애인훈련기관지원*	6,845	간접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 방기금	22) 유해작업환경개선		
		-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31,963	간접
		23)근로자건강보호		
		- 근로자건강센터	20,810	간접
	근로복지 진흥기금	24)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8,153	간접
		25) 근로자복지지원		
		- 기업복지활성화지원	1,031	간접
소계(25개 세부사업)			5,060,297	
합계(44개 세부사업)			6,497,552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2년도 대상사업 수 61개에 비해 17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22년도 6조 7,542억 7,500만원 대비 2,567억 2,300만원 (3.8%)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25	1,775,462	19	1,437,255	△6	△338,207(19.0)
기금	36	4,978,813	25	5,060,297	△11	81,484(1.6)
합계	61	6,754,275	44	6,497,552	△17	△256,723(3.8)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고용노동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¹⁾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등 10개 사업이며, 회계 298억 2,200만원, 기금 2조 2,763억 6,800만원으로 총 2조 3,061억 9,0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취약계층취업촉진 등 45개 사업이며, 회계 1조 1,407억 300만원, 기금 2조 7,839억 2,900만원으로 총 4조 1,913억 6,2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5	29,822	15	1,407,433
기금	5	2,276,368	30	2,783,929
계	10	2,306,190	45	4,191,362

주: 하나의 세부사업에 내역사업이 둘 이상 편성되어 있는 경우 복수로 표시하고, 합계 계산 시 중복은 제외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1) 세부사업 기준, 직접목적사업·간접목적사업 중복 포함(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고용안정장려금)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의 내역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성인지예산서 매뉴얼」에 따르면, 간접목적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는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양성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 사업은 성인지 성과지표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혜자 수’로 설정하고 있어 성별 구별 없이 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 퇴직전문인력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 사업은 남성과 여성 각각의 성별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성평등 기대효과 등 성별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신중년사회공헌 활동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혜자 수(명)	2,714	- 성별 구별 없이 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 퇴직전문인력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음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목표는 일곱 가지이다. 첫째,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이며, 하위 목표는 ① 양성평등정책의 총괄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②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도모이다.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강화이며, 하위 목표는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이다. 셋째, 여성폭력 근절이며, 하위 목표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다. 넷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이며, 하위 목표는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이다. 다섯째, 일 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및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이며, 하위 목표는 일·가정 양립기반 강화 및 가족가치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여섯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이며, 하위 목표는 ①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② 성매매 피해여성 및 청소년 지원이다. 일곱째, 여성, 청소년, 가족과 소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며, 하위 목표는 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②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이다.

2023년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35개로, 회계 22개와 기금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회계 예산안은 5,063억 2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539억 8,7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1조 2,602억 8,900만원이다.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1)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275	직접
		-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325	직접
		2)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8,266	직접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3) 국제개발협력(ODA)	876	직접
		4)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930	직접
		5)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362	직접
		6)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4,407	직접
		7) 양성평등문화 확산		
		- 양성평등주간	93	직접
		- 공모사업 단체지원 및 대외협력 강화	292	직접
		8) 여성사전기관	4,345	직접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11,669	직접
		10)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686	직접
		11)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4,147	직접
		12)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784	직접
		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001	직접
		- 디지털성범죄 대응역량 강화		
		1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6,116	직접
		1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3,574	직접
		1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 청소년지도사 양성사업	351	직접
		17) 청소년활동 지원	3,825	간접
		18) 가족역량강화 지원		
		- 가족역량강화 지원	7,121	직접
		19)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2,070	직접
		20) 아이돌봄지원	354,613	직접
		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가족친화지원사업	572	직접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4,247	직접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	22)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4,355	직접
소계(22개 세부사업)			506,302	
기 금	청소년육성기 금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839	직접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1,217	직접
		2)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0,091	간접
		3)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해소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2,013	간접
		4)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양성평등 기금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2,328	간접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5,349	간접
	- 내일이룸학교	3,113	간접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156	직접
	6)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316	직접
	7)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8,489	직접
	8)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760	직접
	9)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500	직접
	1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95,900	직접
	1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5,205	간접
	1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시설 기능보강 지원	983	간접
	1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06,728	직접
소계(13개 세부사업)		753,987	
합계(35개 세부사업)		1,260,289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2년도 대상사업 수 36개에 비해 1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22년도 1조 1,098억 6,900만원 대비 1,504억 2,000만원 (13.6%)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23	440,917	22	506,302	△1	65,385(14.8)
기금	13	668,952	13	753,987	-	85,035(12.7)
합계	36	1,109,869	35	1,260,289	△1	150,420(13.6)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의 내부사업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

크) 등 33개 사업이며, 회계 4,281억 2,200만원, 기금 6,749억 500만원으로 총 1조 1,773억 8,2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청소년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이며, 회계 38억 2,500만원, 기금 790억 8,200만원으로 총 829억 7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24	502,477	1	3,825
기금	9	674,905	7	79,082
계	33	1,177,382	8	82,907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사업 중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및 사고·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취약·위기가족의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가족역량강화 가족기능 향상률(초기 평가 대비 가족기능 향상 사례/사례관리가 종결된 사례 수)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은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혜자의 성별 구분을 할 수 없고, 사업대상자인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및 위기가족 등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거나 고려하기 어렵고, 양성평등을 고려한 접근에 한계가 있어 성별에 따른 불평등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분석 의견
가족역량강 화 지원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로 가족기능 회복, 자립역량 강화 도모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성과지표 신규 반영 필요성 의견	- ‘가족’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혜자의 성 별 구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대상자 인 저소득 한부모·조 손가족 및 위기가족 등 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 분이므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 개선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음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사업 중 성과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는 청소년 사회안
전망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내일이룸학교 사업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
이 있다.

첫째, 내일이룸학교 사업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
표는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중도탈락률이다.

성인지 사업으로서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양성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
여 사업의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 운영으로 훈련생 중도탈락 방지 및 취업 지원’으로 설정하고,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중도탈락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과 등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 간 형평성 및 성별수혜분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은 공무원, 군인, 경찰, 국회의원 및 보좌관, 광역·기초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기본법」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²⁾,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³⁾,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⁴⁾ 등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1)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

실시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교육인원의 목표치는 2020년 실적 136,176명, 2021년 실적 158,011명 및 2022년 추정치 121,909명의 평균인 125,566명이다.

그러나 동 사업에 따른 교육 대부분⁵⁾은 공무원, 군인, 경찰,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직무교육 또는 의무교육임을 고려할 때, 목표치 상향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내일이룸학교)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중도탈락률 (하향지표, %)	25.0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성과 등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 도록 성과지표 개선 필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교육인원 (명)	125,566	- 대부분 공공분야 종사자의 직무 교육 또는 의무교육임을 고려하 여 목표치 상향으로 적극적 추 진 필요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성인지 정책과정, 성별영향평가 과정, 사이버 교육 등

가. 현황

국토교통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국토교통 분야 여성 인재 양성 및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이다. 둘째,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이며, 하위 목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사회기반 조성이다. 셋째,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이며, 하위 목표는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이다.

2022년도 국토교통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8개로, 일반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4개와 기금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회계 예산안은 2,469억 6,0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9조 7,119억 5,0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9조 9,589억 1,0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1)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1,800	간접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24,560	직접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	3) 혁신도지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지원 -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7,000	간접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	4) 캠퍼스 혁신파크조성	13,600
	소계(4개 세부사업)			246,960
기 금	주택 도시기금	1)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839,300	직접
		2) 다가구매입임대(용자)	3,237,000	직접
		3) 전세임대(용자)	3,511,950	직접
		4)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123,700	직접
소계(4개 세부사업)			9,711,950	
합계(8개 세부사업)			9,958,910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박나경 예산분석관(nkpark@assembly.go.kr, 6788-4631)

남명진 예산분석관(loveymjh@assembly.go.kr, 6788-4632)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2년도 대상사업 수 3개에 비해 5개가 증가한 것이며, 예산안은 2022년도 348억 3,000만원 대비 9조 9,240억 8,000만원 (285.0%)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D-B)
회계	3	34,830	4	246,960	1	212,130(609.0)
기금	-	-	4	9,711,950	4	9,711,950(순증)
합계	3	34,830	8	9,958,910	5	9,924,080(285.0)

자료: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2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국토교통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5개 사업이며, 회계 2,245억 6,000만원, 기금 9조 7,119억 5,000만원으로 총 9조 9,365억 1,0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이며, 회계 18억원으로 총 224억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	224,560	3	22,400
기금	4	9,711,950	-	-
계	5	9,936,510	3	22,400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첫째, 다가구매입임대 용·출자 사업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의 정책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부적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주로 무주택자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 수혜자에 대한 구체적인 성별 통계자료는 수집·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양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높지 않고 성별 사업효과를 측정·분석하기 어려우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둘째, 전세임대(용자)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동 사업의 정책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라는 점에서 양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다가구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사업의 주택 관리·운영 등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가구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사업이 양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동 사업 또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분석 의견
다가구매입 임대출자	한부모 가족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고 개보수 후 공급	- 주거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 여성 폭력피해자 등과 같은 여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 적	- 동 사업들은 성별 보다는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양성평
다가구매입 임대(용자)			
전세임대 (용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분석 의견
	결 후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응과 자립을 지원	등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높지 않음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다가구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사업의 주택 관리·운영 등 부대경비를 지원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외에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편의권을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대수 비율인 저상버스 보급률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등 전체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성인지적 관점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체 교통약자에게 효과적이고, 양성평등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성과목표	분석 의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도입률(%)	37.0	- 전체 교통약자에게 효과적인 성과지표로서, 동 사업에 따른 양성평등 제고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해양수산부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해양수산분야의 여성의 참여 확대와 기회의 보장이며, 하위 목표는 여성구직자의 고용기회의 평등실현 및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이다. 둘째, 해양수산분야 의사결정과정의 여성 대표성 제고이며, 하위 목표는 남녀 평등한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균형적인 단체 및 조직 구성이다.

2023년도 해양수산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11개로, 일반회계 및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210억 8,000만원이다.

[해양수산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 계	일반회계	1) 해양환경교육 운영		
		- 학교 및 사회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3,842	간접
		2)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1,540	간접
		3)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5,250	간접
		4)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305	간접
		5)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360	간접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190	간접
		6)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1,479	간접
		7)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500	간접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8) 어촌활력기반구축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888	간접
		9)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 단체역량, 여성어업인포럼 (단체역량, 여성어업인포럼)	150	직접
		-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417	간접
		10) 어업인안전보험		
		- 보험료 지원	1,449	간접
소계(11개 세부사업)			21,080	
합계(11개 세부사업)			21,080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2년도 대상사업 수 13개에 비해 2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22년도 162억 2,000만원 대비 5억 2,100만원(3.2%) 증가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13	16,220	11	16,741	△2	521(3.2)
기금	-	-	-	-	-	-
합계	13	16,220	11	16,741	△2	521(3.2)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해양수산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의 내역사업인 단체역량, 여성어업인포럼 2개 사업으로 총 5억 2,1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해양환경교육 운영의 내역사업인 학교 및 사회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등 11개 사업으로 총 162억 2,0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2	521	11	16,220
기금	-	-	-	-
계	2	521	11	16,220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첫째,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여성 구직자 참여율’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여성 참여자/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전체 참여자’로 계산되어 실제 해양수산분야의 여성일자리 증가 등 사업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2020년 실적치가 46.1%, 2021년 실적치가 45.4%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목표치는 41.6%로 설정하고 있어 이미 달성된 실적치보다 하향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외에도 임신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국고여객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만족도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등 전체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성인지적 관점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국고여객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만족도는 전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양성평등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여성 구직자 참여율(%)	41.6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실제 목표 달성 평가가 어려움 - 2020·2021년 실적치보다 하향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고여객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만족도(점)	80.0	- 전체 교통약자에게 효과적인 성과지표로서, 동 사업에 따른 양성평등 제고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여성 일자리 영역 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대이며, 하위 목표는 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일자리 확대 및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② 중장년 여성 지원 및 여성기업인 재기지원이다. 둘째, 양성평등의식과 문화확산이며, 하위 목표는 ①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강화, ②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③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한 산업분야 조기 진출 도모이다. 셋째,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의 지원 확대이며, 하위 목표는 ①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② 여성 일자리 지원, ③ 여성의 재기 지원이다.

2023년도 중소기업부 성인지 대상사업은 23개로,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4개와 기금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회계 예산안은 1조 399억 6,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조 3,019억 1,900만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8조 3,418억 8,70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364,113	간접
		2) 공정·품질기술개발(R&D)	42,042	간접
		3) 창업성장기술개발(R&D)		
		- 디딤돌	111,000	간접
		4)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5,300	간접
		5) 여성기업육성*	9,705	직접
		6) 장애인기업육성*	10,347	간접
		7) 마케팅지원사업	24,248	간접
		8) 창업사업화지원*	383,110	간접
		9) 중소기업 재기지원*	16,838	간접
		10) 창업생태계기반구축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686	간접

김태민 예산분석관(taemin@assembly.go.kr, 6788-4629)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11) 벤처기업경쟁력강화	1,370	간접
		12) 산학협력인력양성		
		-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30,750	간접
		13)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12,462	간접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4) 창업인프라지원		
		-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지원)*	9,563	간접
소계(14개 세부사업)			1,039,968	
기 금	중소벤처 기업창업및진 흥기금	1) 신성장기반자금(용자)	1,488,600	간접
		2)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2,230,000	간접
		3) 창업성공패키지*	98,075	간접
		4) 재도약지원자금(용자)*	403,000	간접
		5) 연수사업*	22,729	간접
		6)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8,916	간접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7) 소상공인창업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9,974	간접
		8) 소상공인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사업화) (희망리턴패키지(업종전환·재창업 지원)*)	25,625	간접
		- 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5,000	간접
		9) 소상공인지원(용자)	3,000,000	간접
소계(9개 세부사업)			7,301,919	
합계(23개 세부사업)			8,341,887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2년도 대상사업 수 23개와 동일하며, 예산안은 2022년도 9조 7,699억 6,600만원 대비 1조 4,280억 7,900만원(14.6%)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2(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14	1,045,992	14	1,039,968	-	△6,024(0.6)
기금	9	8,723,974	9	7,301,919	-	△1,422,055(16.3)
합계	23	9,769,966	23	8,341,887	4	△1,428,079(14.6)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여성기업육성 1개 사업이며, 회계 총 97억 5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등 23개 사업이며, 회계 1조 207억원, 기금 8조 3,019억 1,900만원으로 총 9조 3,321억 8,2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1	9,705	13	1,030,263
기금	-	-	10	8,301,919
계	1	9,705	23	9,332,182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전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여성창업자 수혜비율이며, 2023년도 성과목표는 26.0%로 설정되었다. 이는 최근 5개년 평균실적¹⁾ 24.8%에 5%를 상향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년도인 2021년(28.2%), 2022년(추정치, 31.1%)에 여성창업자 수혜 비율이 상승하였다는 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동향」에 따는 여성창업자 비중²⁾이 2021년 기준 46.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3년도 성과목표치는 과소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동 사업은 2023년도 성과목표치의 상향 조정을 통해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창업성공패키지	여성창업자 수혜비율(%)	26.0	- 2021년 실적치가 28.2%, 2022년 추정치가 31.1%임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상 여성창업자 비중이 46.6%임을 고려하여 2023년 성과목표치의 상향 조정 검토 필요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양성평등 제고효과 미흡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창업교육, 실험·실습, 멘토링·네트워킹, 실험자금 및 본격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지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사업창업학교 교육생 중 여성 수혜율인데, 사업대상자 성별 비율에 비해 사업수혜자 중 여성 비율이 연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018)22.2%, (2019)21.3%, (2020)21.4%, 2021(28.2%), 2022^{e)}(31.3%)

2) (2020)46.7%, (2019)46.3%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신사업 창업사 관학교	전체	690명	416명	880명	451명	870명	500명
	여성 (비율)	429명 (62.2%)	279명 (67.1%)	515명 (58.5%)	311명 (69.0%)	482명 (55.4%)	345명 (69.0%)
	남성 (비율)	261명 (37.8%)	137명 (32.9%)	365명 (41.5%)	140명 (31.0%)	388명 (44.6%)	155명 (31.0%)

주: 사업 대상자는 신사업사관학교 교육 신청자이며, 2022년은 추정치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주로 신사업 등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여성 친화적인 분야에서 고유 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지원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서면심사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성별 편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성인지 예산 편성의 취지인 양성평등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창업자 성별에 따른 창업교육 내용 선호도, 여성가족부 추천에 따른 가점이 선발에 미치는 영향 등 성별 편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³⁾

[양성평등 제고효과가 미흡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분석 의견
소상공인창업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예비창업자 성별에 따른 창업교육 내용 선호도, 여성가족부 장관 추천 가점 등 성별 편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참여 유도 필요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사업화 사업의 2022년 성과목표는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여성 참여율”이었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이 참여하는 사유로 2023년도 성과목표부터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목표를 ‘재창업 지원 남성 참여율’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 현황

경찰청의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폭력 근절이며, 하위 목표는 ①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②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③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이다. 둘째, 여성 대표성 제고이며, 하위 목표는 ① 성평등위원회 운영을 통한 치안정책 및 경찰조직 내 성평등 제고, ② 여성경찰 역량 강화 및 직무에서의 성평등 강화, ③ 양성평등교육 등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추진이다.

2022년도 경찰청 성인지 대상사업은 11개로, 일반회계 11개로 구성된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규모는 총 561억 4,900만원이다.

[경찰청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회계	일반회계	사회적약자보호활동		
		-APO시스템 고도화	161	직접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여성대상범죄예방및수사활동)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1,005	직접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교육경비)	128	직접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강의 콘텐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	15	간접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420	직접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자치)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시민경찰학교	183	직접

황진솔 예산분석관(jinsol5621@assembly.go.kr, 6788-4644)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3 예산안	직접/간접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3,000	직접
		아동청소년보호및수사활동(자치) (아동청소년보호및수사활동)		
		-소년범죄조사 전문가 참여제	1,346	간접
		아동안전지킴이(자치)* (아동안전지킴이)	64,539	직접
		경찰인재개발	6,523	간접
		신입순경교육	28,856	직접
		청사시설관리		
		-경찰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	23,595	간접
		경무인사지원		
		-성평등 거버넌스 운영	20	직접
		-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50	직접
		-교육프로그램 운영	216	직접
		-치안정책 성 주류화 제도 운영¹ (성주류화제도 운영)	97	직접
		-성평등 의제 확산	25	직접
소계(11개 세부사업)		56,149		
합계(11개 세부사업)		56,149		

*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2022년도 대상사업 수 11개에 비해 3개가 감소한 것이며, 예산안은 2022년도 614억 500만원 대비 52억 5,600만원(8.6%) 감소한 것이다.

[성인지 사업의 2022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2		2023(안)		비고	
	대상사업(A)	금액(B)	대상사업(C)	금액(D)	대상사업 증감(C-A)	금액 증감 (D-B)
회계	11	61,405	8	56,149	△3	△5,256(8.6)
기금	-	-	-	-	-	-
합계	11	61,405	8	56,149	△3	△5,256(8.6)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경찰청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직접 및 간접목적으로 분류하면, 직접목적 사업은 사회적약자보호활동의 내역사업인 APO시스템 고도화 등 8개 사업이며, 295억 7,500만원이다.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사이버수사역량강화(사이버안전수사활동)의 내역사업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강의 콘텐츠 등 3개 사업이며, 265억 7,400만원이다.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직접목적		간접목적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회계	8	29,575	3	26,574
기금	-	-	-	-
계	8	29,575	3	26,574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9.

나. 분석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경찰청의 성인지 대상사업 중 사이버수사역량강화의 세부내역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강의 콘텐츠 사업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범죄 관련 표준강의안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표준강의안은 경찰관으로 구성된 예방강사가 실시하는 사이버예방교육에 활용된다.

그런데 사이버범죄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사이버 사기·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¹⁾ 사이버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이버범죄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을 만들어 교육하는 것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 사업은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수

1)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제시하는 사이버 범죄 분류를 참고하였다.

없고, 사업 수혜 대상자의 남녀 비율을 동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상승시키기 어려워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대상사업 선정 사유	분석 의견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강의 콘텐츠	사이버범죄 관련 표준강의안을 제 작하여 일반국민 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	- 경찰관으로 구성된 예방강 사의 사이버범죄 관련 표 준강의안을 제작, 활용하 는 것으로, 남·여 통합 교 육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양성에 맞게 균형감 있는 표준강의안을 제작하는 것 이 필요	- 사이버범죄의 대상은 성별 관련 제한이 없 으므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의 제작이 양성평등 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경찰청은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을 관리·개선하고 교육생 급식비, 교육용 물품 구매 등 교육운영을 지원하는 신임순경교육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임순경교육의 성인지 성과지표는 ‘성평등 인식 향상도’로 교육생에 대한 성평등 인식 향상도 측정 설문조사 평균점수로 측정되는데, 측정산식이 교육생의 주관적인 답변에 근거한 설문조사 결과로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성과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당 설문조사는 교육과정 운영 중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단체교육 이수 중인 교육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이 실제 교육생의 체감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편향되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측정된 성평등 인식 향상도가 3.75점인데, 2023년 성과목표도 3.75점으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목표치가 적절한 도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임순경교육 성인지 대상 사업 성과목표]

구분	2021년 실적	2022년 목표	2023년 목표
성평등 인식 향상도(점)	3.75	3.75	3.75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따라서 동 사업은 신임교육생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과 같이 ‘성평등 인식 향상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2023년 성과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분석 의견
신임순경교육	성평등 인식 향상도	3.75	-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객관적인 실적 평가가 어려움 - 2023년 성과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

자료: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02-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2-001098-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